

# 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7. 3. 1

개정 2018.12. 5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사회봉사센터(POSTECH Volunteer Center, 이하 '센터'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①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대학 사회봉사단 구성 및 운영
3. 대학 개별 봉사단체 지원
4. 대학 봉사활동 현황 관리
5. 기타 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업무

② 학생봉사활동 정책 및 교과목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센터에서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18.12. 5)

## 제 2 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총무팀장이 겸직한다. (개정: 2018.12. 5)

② 센터의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담 및 겸직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 for the POSTECH Volunteer Center, 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5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제규정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
4. 삭제 (개정: 2018.12. 5)

5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7조(소집·의결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### 제 3 장 재 정

제8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국고지원금, 그 밖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예·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 다만,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외부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이 정하는 회계운영지침을 따른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5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